

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

재추천 제한기간 적용 계획(안)

2020. 8. .

-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- 재추천 제한기간 적용 계획(안)

특별공급 기관 추천자가 청약포기 후 타 아파트에 재신청하여 고득점자가 중복 추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실수요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재추천 제한기간을 적용하고자 함.

1. 특별공급 개요

□ 근 거

- 장애인복지법 제27조(주택보급) 제1항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(국민주택의 특별공급) 제1항 제17호 및 동 규칙 제36조(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) 제8호

□ 목 적

-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 지원

□ 사업개요

- 추천 대상자 : 인천시에 등록되어 있으며,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
- 대상자 선정 : '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'에 의거하여 결정
- 우선순위 배점기준 (100점 만점)
 - 평점요소 : 6개 (장애정도, 세대원 무주택 기간,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, 세대원 구성, 65세 이상 장애인 유무, 인천시 거주기간)
- 추천절차
 - 읍·면·동 ⇒ 장애인의 주택공급신청서 접수 후 군·구에서 취합
 - 시 ⇒ 장애주택공급대상 장애인 추천 및 최종 선정
 - 추천 장애인 ⇒ 인터넷 및 방문 청약하여 계약체결 완료

2. 재추천 제한 필요성

- 기관추천 받은 후 청약 포기로 인한 실수요자 청약기회 상실
 - 기관추천 신청이후 공개된 분양가 및 평면도가 예상과 달라, 기관추천을 받고도 청약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
 - ※ 기관 추천자가 청약을 포기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나 제한이 없음
- 고득점자의 경우 중복 신청(추천)하여 대기자들의 불만 가중 등
 - 고득점자의 경우 기관추천 결정 후 청약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특별공급에 중복 신청하여 미추천자들의 불만민원 다수 발생

3. 재추천 제한 계획

- 기관추천 명단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재추천 제한(예비추천자 제외)
 - 특별공급 시행사의 사정으로 연기될 경우 청약접수일 까지 제한
 - ▶ 인천 : 통상 1개월, 서울 : 6개월, 경기도 : 제한없음
- 여러 아파트에 기관추천 신청한 경우 중복추천 배제
 - 하나의 아파트에 추천되는 즉시 나머지 아파트들은 기관추천에서 제외
 - ※ 기관추천 선정 공고일 전날(15:00)까지 '포기서약서' 제출시 가능
- 기관추천결과 공고일이 동일한 경우 중복신청 불가 (기시행중)
 - 인천시 특별공급 기관추천결과 공고일이 동일한 경우 타 특별공급과 중복신청 제외
- 인천 장기거주자 우선 배려를 위한 거주기간 3개월 미만자 신청 제한
 - 특별공급 공고 직전(후) 인천시 전입하여 기관 추천되는 사례 방지
 - ▶ 서울 : 3개월, 인천, 경기 : 제한없음(배점기준 차등)

4. 행정사항

- 인천시 홈페이지 공지 및 홍보 : '20. 8월~
- 적용시기 : '21. 1. 1.이후 기관추천 접수 공고분 부터 적용

< 첨부 >

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표

평점요소	배 점 기 준			비 고	
	총배점	기 준	점 수		
장애정도	20	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(중전 1~3급)	20	○ 무주택세대구성원 장애인 ○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○ 중증장애인 배려에 따른 경증 장애인과의 배점 차등 ※ 지적장애·정신장애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인 배우자 포함	
		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(중전 4~6급)	10		
무주택 기 간 [장애인세대]	30	10년 경과자	30	○ 본인 거증 책임 ○ 장애등록일 이후부터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○ 19세 이전에는 신청자격이 없음 예) 10년 전에 장애 등록한 25세 장애인인 경우, 만19세 이후 기간만 무주택기간 산정 ※ 주택소유여부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에 유의	
		9년 경과자	25		
		8년 경과자	20		
		7년 경과자	15		
		6년 경과자	10		
		5년 경과자	7.5		
		4년 경과자	5		
		3년 경과자	3.5		
		2년 경과자	2		
		1년 경과자	1		
세대원 중 장애인 유·무	10	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	2인이상	10	○ 신청인(장애인) 미포함
			1인	5	
세대원 구성	20	5인 이상		20	○ 신청인(장애인) 포함, 동거인 미포함 - 주택공급신청자(장애인)의 배우자 -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(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이면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
		4인		16	
		3인		12	
		2인		8	
		단독세대		4	
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	5	65세 이상 장애인 있는 가구		5	○ 신청인(장애인) 미포함
인천시 연속 거주기간	15	5년 이상		15	○ 장애등록일 이후부터 연속하여 인천시에 거주한 기간 ○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에는 인천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 ○ 주민등록 탈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○ 해당 거주지 장애인에 대한 우선 배려 예) 10년 전에 장애등록한 25세 장애인인 경우, 만19세 이후 기간만 인천시 거주기간으로 산정
		4년		12	
		3년		9	
		2년		6	
		1년		3	
		1년 미만 (0)		1	
본인 배점 합계			(점)	○ 본인 총점 반드시 확인	